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20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유한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4. 9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5.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3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위와 같이 선행함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국식